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변경(안)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변 경(안)	비 고
제1조(적용범위) ~ 제3조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) (생 략)	제1조(적용범위) ~ 제3조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) (좌 동)	
제4조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) ① 이용자가 결제제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 ② (생 략)	제4조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) ① ----------은행에 ----------. ② (좌 동)	- 공정위 시정 요청 사항 반영
제5조(이용시간) ~ 제10조(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) (생 략)	제5조(이용시간) ~ 제10조(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) (좌 동)	
제11조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정보집중 및 제한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 앞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생략하기로 합니다. ③ 은행은 제1항에서 수집된 미결제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제도 이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. 가. 구매기업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제한 나. 기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판매기업의 외담대 취급 제한 다.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재산정 라.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따른 은행의 결제제도 이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방식	제11조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정보집중) ① (좌 동) ② 본 약관의 체결에 의하여 제1항에 포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 (삭 제)	- 조 제목 변경 - 문구 수정 - 항 삭제 (제11조의2 신설)

현 행	변 경(안)	비 고
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구매기업의 본 결제제도 이용 제한		
(신 설)	제11조의2(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미결제 및 거래정지)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미결제 처리합니다. 1.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2. 무거래 3. 사고신고서 접수(계약불이행, 피사취, 합의불가) 4. 법적제한 ② 은행은 제1항의 미결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발행인인 구매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거래정지하며, 그에 따른 거래정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“예금부족” 미결제로서 은행으로부터 입금통보가 없을 때 :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2. “무거래”로 미결제된 때 : 미결제일의 익영업일 3. “사고신고서 접수” 또는 “법적제한”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로서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 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: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4. 모든 은행을 통하여 1년간 6회 이상 입금통보된 “예금부족”, “사고신고서 접수” 또는 “법적제한” 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의 송달로 인한 미결제가 있을 때 : 미결제일의 익영업일 ③ 제2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발행인은	- 조 신설 (미결제사유 및 거래정지일 명시)

현 행	변 경(안)	비 고
	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간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. ④ 기타 미결제 사유 경합시의 처리, 거래정지 및 미결제 구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규약 시행세칙에 따릅니다.	
제12조(거래내용의 확인) (생 략)	제12조(거래내용의 확인) (좌 동)	
제13조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/ 정정) ① ~ ③ (생 략) ④ (생 략) 가. ~ 나. (생 략) ⑤ (생 략)	제13조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/ 정정) ① ~ ③ (좌 동) ④ (좌 동) 1. ~ 2. (좌 동) ⑤ (좌 동)	- 호 표기방식 변경
제14조(손실부담 및 면책) ① ~ ④ (생 략)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 가. ~ 라. (생 략)	제14조(손실부담 및 면책) ① ~ ④ (좌 동) ⑤----------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-----. 1. ~ 4. (좌 동)	- 문구수정 - 호 표기방식 변경
제15조(통지의 효력) (생 략)	제15조(통지의 효력) (좌 동)	
제16조(약관 변경)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,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. ②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관 변경사항을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	제16조(약관 변경) ① ----------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기로 합니다.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	- 공정위 시정 요청 사항 반영

현 행	변 경(안)	비 고
	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	
제17조(이의 제기) (생 략)	제17조(이의 제기) (좌 동)	
제18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① (생 략)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을 적용합니다.	제18조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① (좌 동) ② ----------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----------	- 법률명 변경
제19조(준거법) (생 략)	제19조(준거법) (좌 동)	